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 實狀과 그 性格*

權 仁 赫*

目 次	
1. 머리말	4. 謀變의 主體와 歷史的 性格
2. 社會經濟的 背景	5. 맺음말
3. 謀變의 動機와 展開樣相	

1. 머 리 말

19세기 前半期의 한국사는 봉건지배층과 농민 간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는 가운데 洪景來亂을 비롯하여 각 처의 민란이 빈번하게 발생된 시기였다. 그 중 1811년의 洪景來亂은 그 자체의 약점과 한계성으로 인해 비록 실패하였지만 광범한 농민층에게 사회적 각성을 고취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¹⁾받고 있다. 반면에 그 후부터 1850년대까지의 소규모 민란은 洪景來亂의 부수적 산물 내지

* 이 논문은 1987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人文大學 史學科 副教授

- 1) 鄭爽鍾, “洪景來亂의 性格”, 《韓學史研究》7, 1972; 《傳統時代의 民衆運動》下, 도서출판 풀빛, 1981에 재수록
河原林靜美, “1811年 平安道에 있어서 農民戰爭”, 《寧樂史苑》19, 1973; 《封建社會解體期의 社會經濟構造》, 청아출판사, 1982에 재수록
鄭昌烈, “韓國民衆運動史”, 《韓國文化史新論》, 中央文化研究院, 1975; “農民運動”, 《韓國文化論特講》, 서울大 出版部, 1979

주변적 사건으로만 취급²⁾될 뿐 더 이상의 해명이 없기 때문에 각 민란이 갖는 개별적 실상과 역사적 성격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민란에 대한 구명이 前後時期에 나타난 洪景來亂과 壬戌民亂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조선후기 민중운동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리라는 전망에 입각해 본다면 위 문제들은 그리 쉽게 방치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동 기간 중에 발생된 여러 민란 중 濟州의 梁濟海 謀變을 살펴봄으로서 이 시기의 民擾 一端을 알아 보고자 한다.

梁濟海 謀變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金泰能씨의 글³⁾이 유일하다. 그러나 한정된 紙面 관계 때문인지 몰라도 논리 전개가 충분치 못하고 논의 시간대가 해방 이후까지 연장됨으로서 謀變에 대한 실상파악은 물론 그 역사적 성격 규정마저 유보된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필자는 謀變을 가능케 한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謀變의 구체적 동기 및 그 전개과정에 일차적 관심을 두면서 謀變의 주체세력과 그 역사적 성격을 아울러 파악코자 한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느니 만큼 논의의 중복과 억측이 많을 것이다. 이점 叱正을 바란다.

2. 社會經濟的 背景

梁濟海 謀變이 발생된 19세기 초 제주사회 모습은 이 사건을 담당한 察理使 李在秀의 활동을 통해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李在秀는 그에게 부과된 사건 진상규명과 민심회유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狀啓⁴⁾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牧使 金守基의 罷黜과 謀變罪人에 대한 처리문제, 養

2) 金鎮鳳, “農民의 抗拒”,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75, pp.112~115. 姜萬吉, 《韓國近代史》, 創作과 批評社, 1984, pp.46~47.

3) 金泰能, “梁濟海亂과 濟州民의 自主企圖”, 《제주도》 34, 제주도청, 1968, pp.151~156. 이 외에 鄕土史 정리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다룬 概說書가 있다. 金宗業, 《耽羅文化史》, 조약돌, 1986, pp.144~147.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pp.173~177참조.

4) 察理使 李在守는 순조14년 2월 13일 濟州에 도착하여 동년 4월 13일 重熙堂에서 國王을 召見할 때까지 모두 6차의 狀啓를 올렸다. 《日省錄》 純祖 甲戌年閏 2月 14日 丙子條(2件), 동 3月 5日 丙申條(2件), 동 4月 8日 己巳條(1件), 동 4月 13日 甲戌條(1件; 여기서는 狀啓 결과만 확인됨) 참조.

老宴 設行과 旌義縣監 權就一의 罷黜문제, 民邑弊癘에 관한 別單, 前 牧使 李顯宅의 탐학상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이 중 民邑弊癘에 관한 別單은 당시 제주사회 실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나름대로의 變通策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그래서 필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梁濟海 謀變이 발생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알아 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別單 내용의 총체적 파악과 차후 상세한 설명의 필요성에서 아래와 같이 <표1>⁵⁾을 작성한다.

<표1> 別單 內容

分野	別單內容
社 會	○ 差任은 斥私惟公하도록 本牧에 嚴飭할 것
經 濟	○ 還餉·平役軍의 剩條(法外濫徵)는 일체 防塞할 것 ○ 儲穀耗의 給代는 稅穀(場稅穀)으로 하고 賑耗는 會錄할 것 ○ 牧場 中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은 牧子의 起耕을 許하고 折半減稅할 것. 그리고 牧子의 元料(料米)는 甲寅節目(正祖 18)에 의할 것 ○ 牧馬剪烙은 정식대로 三年一次하고 말갈기 封進은 排年備用할 것 ○ 大靜牧場의 私土相換者는 牧場에 還作하고 그 文卷은 소각할 것 ○ 進上鹿獐皮의 各樣求請은 일체 엄금할 것 ○ 船稅는 上船을 5兩으로 하고 이하(中·下船)는 체감하여 정식 시행할 것 ○ 馬商稅木은 每匹 10尺으로 均稅할 것 ○ 3邑 舊稅는 일체 減總하고 (官買舊)의 勒買는 엄금할 것
其 他	○ 行誼·武術·文藝가 있는 자는 並宜 收用할 것 ○ 孝子·烈女는 褒獎할 것

5) 別單內容은 《日省錄》을 비롯하여 여러 官撰史料에 나온다. 그러나 《朝鮮王朝實錄》 내용이 그 중 간명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고 詳述의 필요가 있을 때는 ()로 처리하였다. 단 社會分野 내용은 다른 史料에만 보이기 때문에 《備邊司廳錄》의 것을 취해 보완하였다.

〈표1〉에서 보듯이 別單 내용은 모두 12개 항으로 사회관계가 1개항, 경제관계가 9개항, 기타가 2개항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기타의 行誼·武術·文藝者 등에 대한 내용은 본 논의와 거리가 있으므로 세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우선 사회문제로 지적된 差任 문제는 한정된 職窠에서 비롯된 인사의 불공정 행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이것은 濟州民의 官界進出과 관련된다. 당시 濟州民의 官界進出路는 文·武科 등의 科試와 지방행정에의 참여로 가능하였는데 앞 경우는 濟州가 처한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연하자면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그것도 바다로 격해 있는 최악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설사 이를 극복하고 중앙에 간다 하더라도 財力不備에 따른 장기간의 체류가 곤란함으로 科試를 통한 入仕는 극히 어려운 실정⁶⁾이었다.

그래서 朝廷에서는 御史를 파견해 外方別試를 실행한다거나 全羅道 文科初試 1額을 濟州에 할당⁷⁾하거나 또는 小科初試(儒生陞補試)를 濟州官衙에 위임함으로써 지리적 조건에 기인한 濟州民의 불이익을 다소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外方別試가 특별한 일이 있을 시에만 거행되고 陞補試는 文官守令⁸⁾이

6) 《邑誌》 6, 〈濟州邑誌〉 濟州牧 風俗條, 不貴京職, 亞細亞文化社, 1983, p. 185; 동 〈濟州, 大靜, 旌義邑誌〉 濟州牧 風俗條, 不貴京職, p. 256. 《癡窩全集》 4, 〈耽羅誌草本〉 卷1, 濟州牧 土俗條, 不貴京職, 驪江出版社, 1986, p. 154.

7) 外方別試는 비정기적인 시험으로 災難, 民擾 등 특별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만 행해졌다. 이것은 文·武科만 있고 單試로 及落을 결정, 直赴殿試 자격을 주었는데 濟州는 仁祖1년에 設試되었다. 《仁祖實錄》 卷3, 仁祖1年 癸亥, 閏10月 戊子, 33冊, p. 556. 《增補文獻備考》 下, 卷187, 選舉考4, 科制4, 東國文化社, 1970, p. 170 참조. 한편 定期試인 文科(大科) 初試1額은 제주 경우, 문관 牧使(또는 判官)와 教授가 試取하였다. 《肅宗實錄》 卷35, 肅宗27年 辛巳, 6月 丙寅, 39冊, p. 600. 《癡窩全集》 4, 〈耽羅誌草本〉 卷3, 舊例條, 科試, p. 306 참조.

8) 陞補試는 小科初試에 해당하는 것으로 開城·水原·濟州에서 시행되었다. 濟州는 仁祖17년에 실시되었고 考試官3員이 매년 2명을 試取해 直赴會試토록 하였다. 후일 考試官, 試取生의 數는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는다. 《增補文獻備考》 下, 卷188, 選舉考5, p. 191, p. 197. 《癡窩全集》 4, 〈耽羅誌草本〉 卷3, 舊例條, 科試 p. 306; 동 〈耽羅啓錄〉 道光21年 10月 19日, pp. 591~592. 《備邊司謄錄》 236, 憲宗15年 己酉 3月 15日, 24冊, p. 17; 동 哲宗元年 庚戌 4月 16日, 24冊, p. 157. 참조.

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科擧를 통한 官界進出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濟州民 중 才望이 있는 자는 濟州官衙의 執事를 영예로 여겨 鎮撫, 旅帥와 같은 軍任과 書員·知印·貢生과 같은 吏任⁹⁾을 바라게 되었다. 이처럼 자신이 소속한 지방사회로의 관심 전환은 위에서 지적한 濟州의 지리적 조건에 기반한 것으로서 이제는 濟州職窠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의 발생을 예고하게 되었다. 즉, 한정된 職窠를 위요한 치열한 경쟁이 대두되게 되었다. 후일의 사실이지만 憲宗代 상황을 살펴보면

人多窠小每患積滯 上而頽私下而權力 又爲之錯於間 有勢者多年而仍據 無勢者終身而不得 是豈公平均一之政哉¹⁰⁾

에서와 같이 人多窠小에 따른 인사적체 문제가 심화되어 官衙 執事를 위한 각종 청탁행위가 만연되고 있었다. 이러한 중에 有勢者는 자신이 占한 지위를 계속 향유하고 無勢者는 평생토록 재야에 있어야 하는 극도의 인사가강 문란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官人輩들은 사사로운 契를 조직하여 그들과 성향을 같이하는 무리에 게만 座首·千揔 등의 지위를 부여¹¹⁾하고 守令들은

儒鄉錄案之際 吏校差任之間 賄賂公行 存拔陞降殆無常度 非獨爲肥己之資 兼售媚寵之計 或以見闕之窠 通報於本牧裨將 甘聽所囑許其受賂¹²⁾

9) 《邑誌》 6, 《耽羅志》 濟州牧 風俗條, 不責京職, p. 19.

10) 《凝窩全集》 4, 《耽羅錄》 中, 壬寅(헌종8) 6月 25日條, p. 68.

11) 《備邊司臚錄》 204, 純祖14年 甲戌 5月 28日, 20册, p. 801. 이 시기 濟州 鄉任層인 座首·風憲 등은 地方官의 差任 대상으로 강력한 중속관계에 있었다. 특히 風憲 경우는 洞任(里任)과 같이 각종 命令의 전달자, 賦稅徵收의 책임자로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凝窩全集》 4, 《耽營關報錄》의 내용 중 傳令, 甘結. 《壬戌錄》 《濟州按覈狀啓臚錄》 중 座首, 風憲 供白 참조.

12) 《日省錄》 純祖 甲戌年 3月 15日 丙申, 濟州察理使李在秀狀罷旌義縣監權就一, 이러한 매관매직은 軍官에 의해서도 저질러 졌고, 이 때 明月萬戶 任賂額은 錢3百兩이었다. 동 閏2月 14日 丙子, 濟州察理使李在秀狀罷牧使金守基 참조.

에서 처럼 儒鄉錄 작성과 吏校 差任 등과 관련하여 공공연한 收賂行爲를 자행함으로써 제주사회의 任職(吏任·校任·軍任·鄉任)은 부패 관료 와의 밀착도, 任賂額數의 다과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다.

한편 경제문제는 <표1>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還穀·平役米의 法外濫徵과 지방관아의 財政補用 문제, 그리고 雜稅·雜役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 중에서 法外濫徵은 환곡과 평역미의 수봉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吏奸 作弊에 따른 添剩과 新剩名色의 創出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는 官穀 1斛을 분급할 때 10斗도 채 못되게 지급하고 징봉 시에는 20斗로 받아들이는 捧厚分薄 현상으로 그리고 후자는 국가에서 용인한 色落米條 1升 외에 2升을 더 징수하는 소위 色三升 현상¹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官衙 財政補用 문제는 제주관아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別儲穀이 湖南 賑資로 대체¹⁴⁾되면서부터 발생되었다. 본래 別儲穀은 장차 있을 지도 모르는 3邑 賑資를 위해 正祖 23년에 설치¹⁵⁾한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이의 取耗(儲穀 耗)行爲를 통해 관아재정을 보충하고 있었다. 그런데 湖南賑資에 따른 위와 같은 돌발적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관아재정 또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의 해결책으로 牧場稅穀(場稅穀)과 平役米 일부를 관아용도로 전환하고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하자 賑恤穀의 參半排用과 場稅穀의 全數 取用을 모색¹⁶⁾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給代 노력은 목장 내 起耕을 불허하는 국가입장과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貢馬養育을 중시할 것인가 또는 犯耕處(목장내 기경)를 인정하여 관아재정을 보충할 것인가를 주요 쟁점으로 대두케 하였다. 특히 후자 경우는 土地甚貴, 民戶漸增이라는 상황의 전개로 목장 내 기경이 날로 확대¹⁷⁾되고 있었

- 13) 《備邊司謄錄》 204, 純祖14年 甲戌 5月 28日, 20冊, p. 801. 還穀, 平役米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拙稿,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李元淳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86, pp. 288~295 참조.
- 14) 《備邊司謄錄》 200, 純祖10年 庚午 6月 6日, 20冊, p. 203. 이 시기 湖南으로 移轉된 別儲穀은 총 8,673石으로 이의 耗條 8百石이 純祖22年, 憲宗5年에 제주로 輸來되었다. 《濟州牧關牒》〈奎: 15125〉道光25年 3月 1日條 참조.
- 15) 《凝窩全集》 4, 〈耽羅誌草本〉 卷2, 糶糶條, 別儲米, p. 241.
- 16) 《備邊司謄錄》 204, 純祖14年 甲戌 5月 28日, 20冊, p. 802.
- 17) 《書啓輯錄》 4, 〈濟州巡撫御史朴秉衡書啓〉(奎: 15083), 《凝窩全集》 4, 〈耽營關報錄〉 辛丑(헌종7) 10月 29日, 謄本備局, pp. 472~473.

기 때문에 관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로부터의 收稅가 보다 현실적인 것¹⁸⁾이었다.

한편 雜稅·雜役은 도민의 커다란 고통으로서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미 전반적 개관을 한 바 있었기¹⁹⁾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당시 논의하지 않았던 부문을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제주는 그 지역이 험소하고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부담해야 할 役은 날로 증대되고 있었다. 그 중 牧子役은 다른 무엇보다도 큰 고역으로서 避役을 위한 納賂圖頤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성에서 牧子庫를 설치 운영하거나 또는 平役庫米를 지급하여 故失馬 발생에 따른 徵馬 폐단을 제거코자 하였다. 아울러 各場 犯耕處로부터 수세를 단행하여 그들에게 料米를 지급하거나 또는 그들로부터의 收稅를 조정하여 常年에는 折半減稅, 點落 해에는 全數減稅로 해 牧子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그 방향이 永除보다는 부담완화 쪽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들 苦役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가 없었다.²⁰⁾

그리고 牧馬點落 때 행하는 말의 꼬리와 말갈기 剪取도

近年以來 點落則雖用三年之例 其所剪尾鬣則只用於當年 以其贏餘都歸於私用 後二年應供之物 無以措備 則雖非點落當次之年 每年剪取勢所不已 而以至於馬賤尾貴之境²¹⁾

에서와 같이 3년마다 행하는 상례를 무시하고 매년 剪取함으로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었다. 말의 꼬리, 말갈기 剪取는 본래 紅騎鞍 織造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서 소요의 여분은 모두 훗날의 應供物資로 비축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여분을 不正蓄財의 호기로 엇봄에 따라서 매년 전취 나아가 應供物資 全無

18) 더우기 場稅數은 중앙에 上納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관아의 사정에 따라 단지 發令區劃되고 있었다. 《備邊司謄錄》 204, 純祖14年 甲戌 5月 28日, 204冊, p. 802 참조.

19) 拙稿,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pp. 295~300.

20) 上揭論文, pp. 295~296.

21) 《日省錄》 純祖 甲戌年 4月 8日 己巳, 濟州察理使李在秀別單

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때 부정축재의 주체자는 牧使·判官으로서 各洞별로 할당된 上納量을 無價로 책납하고 이를 다시 吏奴輩에 강제로 분급, 白木(무명)으로 勒捧²²⁾함으로서 부당한 利를 축적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無價收納, 勒賣에 따른 民隱이 누적되고 있었다.

또한 進上和 紅鞍製造에 필요한 獐皮·鹿皮 등을 둘러싸고 많은 폐해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는 牙兵²³⁾의 선석 부담으로서 매년 일정량을 관아에 상납하면 관아는 平役米에서 計減本價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 때 牙兵에 지급한 代價가 지극히 낮게 책정됨으로써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時價로 鹿皮1領은 白木 8·9尺, 獐皮는 白木 1匹이었는데 각각을 小米 2升, 小米 2斗로 給價함으로써 白徵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되었다. 더우기 증가일로에 있는 각종 求請과 과도한 責徵은 그 대상인 鹿, 獐의 절종을 재촉하여 涼臺·白木 등의 時價防納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牙兵 부담은 더욱 늘어²⁴⁾나게 되었다.

한편 商船의 규모에 따라서 上船은 細木 1匹, 中船은 中木 1匹, 下船은 常木 1匹을 船主가 부담해야 했는데 그 수납과정에서 담당 吏校의 點退作奸과 稅額의 불규칙한 증감으로 말미암아 船稅를 둘러싼 여러 폐단이 노정되었다. 더우기 純祖11년부터 나타난 該吏의 수탈적 행위는 부정의 극에 달하여 船戶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는 별도의 細木에다가 일정한 표식을 하고서 이를 외부에 先賣한 후 船主로 하여금 다시 買納토록 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이 연속적으로 반복 회전됨에 따라 船戶 존재는 극도로 불안²⁵⁾하게 되었다.

그리고 馬商이 출륙할 때 부담하는 格稅木을 둘러싸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는

22) 《凝窩全集》4, 《耽羅錄》上, 辛丑(헌종7) 8월 18日(?) p. 32. 《書啓輯錄》4, 《濟州巡撫御史朴天衡書啓》(奎: 15083)

23) 牙兵은 防營親兵으로서 輪番入防의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入防之規가 동요되면서부터 放番收米·放軍收布·納錢 등의 代納현상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入防之數는 5, 6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書啓輯錄》4, 《濟州巡撫御史朴天衡書啓》. 《凝窩全集》4, 《耽羅錄》中, 辛丑 11월 21日, p. 48; 동 壬寅(헌종8) 4월 29日, 上領閣書, p. 61; 동 壬寅 8월 10日, 牙兵軍制釐革節目, pp. 72~73 참조.

24) 《日省錄》純祖 甲戌年 4월 8日 己巳, 濟州察理使李在秀別單

25) 拙稿,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p. 300.

本島馬商出陸時 無論駑駿格稅木二十尺 乃是例捧者 而上等馬則猶可說也 至於中
下等馬 其元馬價不過二疋或疋半 則其所稅納極爲過重²⁶⁾

에서 처럼 上等馬를 기준으로 한 格稅木 20尺이 中·下等馬에까지 확대 적용된 데에 따른 문제였다. 당시 中·하등마의 馬價가 각각 2疋, 1.5疋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실로 과중한 부담이었다. 그래서 正祖 18年 御史 沈樂洙는 이러한 실상을 감안하여 中·하등마의 경우 각각 15尺, 10尺의 稅收를 상신하여 各馬 駑·駿에 따른 格稅木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駑·駿(上·중·하등마)의 판정을 담당한 該吏의 作奸이 존재하는 한 별 실효가 없는 것이었다. 이들은 실제 良馬가 희소한 상황 하에서 駑鈍馬를 駿馬로 둔갑시키는 중간 幻弄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계속 추구²⁷⁾하고 있었고 그 결과 馬商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또한 僭女를 대상으로 한 水稅蠶과 官貿蠶의 폐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폐단은 僭女の 존재기반을 위협하리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서 正祖 18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²⁸⁾하게 하였다. 그러나

挽近以來 欲售高價於陸地 乃有官吏之交征 收稅時雖用十七斤之秤 而不以衡平 惟
事加捧 一束之大殆過三束 一秤之捧恰爲四五十斤 過濫成習 襲謬爲例²⁹⁾

에서와 같이 蠶 매매에서의 차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관리들의 謀利行爲가 극성을 부리게 됨에 따라서 僭女들의 고통은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다. 즉 水稅蠶을 징봉하는 과정에서 저울을 속여 1束을 3束으로 1秤(17斤)을 4·50斤으로 加捧하는 가혹한 濫徵현상이 발생되게 되었다. 그리고 正祖 시기에 결정된 官貿蠶 革罷도 旌義縣民들의 연기 요청에 따라서 이듬해로 넘겨지게 되고 이것도 該官

26) 《日省錄》 純祖 甲戌年 4月 8日 己巳, 濟州察理使李在秀別單

27) 《日省錄》 純祖 甲戌年 4月 8日 己巳, 濟州察理使李在秀別單

28) 拙稿,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p. 297.

29) 《日省錄》 純祖 甲戌年 4月 8日 己巳, 濟州察理使李在秀別單

의 不許에 따른 계속적인 보류로 인하여 潛女들의 號泣稱冤³⁰⁾이 만연되게 되었다.

3. 謀變의 動機와 展開樣相

梁濟海가 모변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叙上의 사회경제적 폐해에 대한 개혁의지와 島內 權力掌握이라는 양 측면이 동시에 混在되고 있었다. 이 중 도내 권력장악은

更招以爲 渠以遐土居民 本無怨國之心 而爲人上之心恒切于中 敢於西變之日 陰有投賊之計 果與益剛有所云云 惟此一島作爲吾有之心 其來久矣³¹⁾

에서와 같이 이미 오래 전부터 품어 왔던 것으로 중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처럼 도내에 한정된 권력욕은 同謀者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1인이 제주를 다스리면 島民에 크게 유리하리라는 發論과 성사 후의 島主는 반드시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구체화³²⁾되어 갔다. 이 때 자신이 島主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그 자신이 謀變의 주도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겠지만 이보다는 乙那後孫이라는 점이 보다 크게 작용³³⁾하고 있었다. 이는 옛 三姓時代의 환상에 기반한 尙古의 입장에 터전한 것으로서 모변의 성격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었다.

한편 당시 만연되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폐단은 梁濟海의 모변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었다. 앞서서도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한정된 職窠를 둘러싸고 전개된 배타적 人事行政은 이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의 불만을 누적시켜 왔고 雜稅·雜役に 집중된 고질적 병폐는 도민의 생존을 근저로부터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梁濟海는 도민의 賦役苦重과 奸惡吏校의 타도를 주장³⁴⁾하면서

30) 《日省錄》純祖 甲戌年 4月 8日 己巳, 濟州察理使李在秀別單

31)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濟州牧使金守基馳啓 梁濟海問目

32) 同上書, 姜成五問目, 尹光宗進告

33) 《日省錄》純祖 甲戌年 閏2月 14日 丙子, 濟州察理使李在秀馳啓 金益剛 내용 (梁濟海)自稱乙那後孫島中主人則戒勿更說

34) 《同上書》姜成圭 내용. 渠供中 與濟海高德好數次酬酢 不過賦役苦重之事吏校折臂之舉云爾. 이러한 記事는 동 金昌瑞 내용에도 보인다.

濟海曰 此島民生挽近以來賦役苦重尊安無路 吾方爲衆民可生之圖 而必也謀殺營門
及三四官長 合而爲一然後可除民弊³⁵⁾

에서 처럼 도민의 생활안정과 각종 폐해의 척결을 위해서는 營門과 3군 4官長 (牧使·判官·兩邑 縣監)의 제거가 선결조건이라 파악하고 이들의 謀殺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謀殺計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 단서는 純祖 12년에 나타났다. 이 해 洪景來亂이 발발해 定州城戰鬪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는 洪景來側에 참여하고픈 의사를 표명³⁶⁾, 그의 反封建的 입장을 드러낸 바 있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동 5월에 보다 구체화되는데 그 내용은 新·舊牧使 교체를 틈타 4官長을 제거하고 나아가 地土船의 출륙금지와 來島陸船의 覆沒³⁷⁾을 통하여 제주도의 고립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官長 제거라는 구호는 제주사회 장악을 위한 전제조건이었지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계획은 成事に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치 못함에 따라서 실패로 돌아가고 이듬해의 재기를 도모하게 되었다.

純祖13년으로 접어들면 前年에 이루지 못한 謀變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다 긴밀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 내용은 官長 打殺을 통한 別國建設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軍器確保와 募軍活動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이 때 군기확보 문제는 화약·철환·검·철편·조총·궁시 등이 주요 무기로 등장하였고 모군 문제는 900명의 인원확보가³⁸⁾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상되었다.

그러나 앞의 군기확보 문제는 당초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 것은 군기조달을 담당한 자와 謀變을 주도적으로 이끈 자와의

35)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濟州牧使金守基馳啓 尹光宗進告. 이 외 동 姜先貴·姜成三·姜成五 供招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

36)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金益剛問目
供招以爲 渠與濟海結姻情密 前年(순조12) 二月渠往濟海家則濟海曰 今聞西變大起云 吾欲出陸投賊云 故聞甚驚駭言實而罷矣. 이 사실은 동 梁濟海更問目에도 나온다.

37)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梁濟海更問目, 尹光宗進告

38) 《同上書》梁日新問目, 尹光宗進告

관계가 지극히 모호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그 결과는 舉事月로 정한 11월까지도 鐵鑪製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육지에서 質來해야 할 火藥·鐵丸이 끝내 반입되지 않은 것³⁹⁾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梁濟海는

濟海曰 器械則鳥銃善放者爲三十餘名 而各有自持鳥銃 環刀覓得者亦爲二十餘箇 而可敷數少云 故渠(尹光宗)曰 若少兵器各持蒙同大杖一箇 則足其一當百 何患兵器之少也 濟海曰 爾言正合吾意云⁴⁰⁾

에서와 같이 이미 마련된 鳥銃, 環刀를 제외하고는 몽둥이·장대와 같은 단순한 무장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한편 모군활동은 知覺者와 勇力者에 일차적 관심⁴¹⁾을 두면서 소기의 인원을 확보코자 하였다. 그 방법은 대략 세 가지로서 첫째는 等訴를 통한 모군이였다. 당시 제주사회에는 相贊楔의 피해가 크게 대두되고 있었는데 이 때 梁濟海는 이의 타파를 구실로 삼아 도민의 집단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設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等訴에는 수수방관적인 도민들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에 의한 모군은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되었다.⁴²⁾ 둘째는 회유에 의한 모군활동으로 앞의 等訴 형태가 도민의 公開의 동원을 기도했다면 이것은 거사에 필요한 소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成事 후의 이익을 암암리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은 富貴榮華에 대한 약속⁴³⁾과

39)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尹光宗進告, 姜先貴·姜成圭·梁濟海 問目. 동 甲戌年 閏2月 14日 丙子, 金光鼎 내용.

40)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尹光宗進告

41)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尹光宗進告, 文彭年·梁濟海·金益剛 問目

42) 《日省錄》純祖 甲戌年 閏2月 14日 丙子, 高元昌·金殷實·金順瑞·宋益大 내용. 相贊楔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이것이 넓게는 民冤의 대상으로서 좁게는 梁濟海의 주요 개혁 대상으로서 등장된 것을 보면 이는 도내 권력과 관계된 官人輩들의 作契(註11 참조)가 아닌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거리가 먼 이의 타파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43)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姜先貴·文彭年·姜成圭·姜成五問目

梁濟曰 男兒生世娶妻生子 足知其世味與其無名而死 不若舉大事而擅名後世⁴⁴⁾

에서 처럼 공명심을 자극함으로써 모변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세계는 위협적 언사⁴⁵⁾를 통한 모군으로 회유 방식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이 방법은 불응 시의 결과를 미리 알려 줌으로써 상대자의 심적 갈등과 공포심을 일으켜 모변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여러 방법에 의해 전개된 募軍活動은 純祖13年 9月 초에 이르러 70명의 인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초 계획한 9백명에 비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 인원을 채우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만했다. 그래서 謀變 主導勢力 모두가 20명 내지 50명의 인원을 확보한다는 방침 하에 적극적인 모군활동에 나섰다 그 결과 10月 중순 경에는 4·50명의 未充者만이 남게 되었다.⁴⁶⁾

또한 梁濟海도

濟海曰 東村三四里之民姑未締結 來初四日同往東村爲計⁴⁷⁾

에서 처럼 東村 3·4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모군활동을 전개하여 11月 4日 경에는 소기의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다.⁴⁸⁾ 그러나 이 때에 일단락된 모군 인원이 처음 구상한 9백명이었을까 라는 문제는 아직도 불확실하다. 이 문제는 募軍地域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舉事日의 擇定은 10月 초순 경 梁濟海와 梁時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때 양자에 의해 결정된 시기는 11月 21日로 거사 前日에 加嶺(加里嶺, 加嶺生求蔽)

44) 《同上書》尹光宗進告

45) 《同上書》尹光宗進告, 姜成三問目

46) 《同上書》文彭年·金益剛·高尚得問目, 尹光宗進告. 이 때 高德好·姜必方は 20명, 高元昌은 50명의 募軍을 할당받았다.

47)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尹光宗進告

48)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梁仁福問目

(梁)濟海父子曰 所約舉兵事汝已同謀而今則募兵充數 事機迫頭汝亦趁期會集云

서 聚兵하고 익일에 州城을 공략, 直犯官家한다는 내용⁴⁹⁾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그 시기가 문제가 되었다. 同謀者 尹光宗의 말을 빌리면 양자가 결정한 11月 21日是 營門 新舊番과 上下各班의 會點日이었기 때문에 거사일로는 적당치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논의한 끝에 11月 16日을 聚兵日로 하고 익일을 거사일로 변경, 결정⁵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때의 거병이 梁濟海가 언급한 대로 兩邑 同時舉兵⁵¹⁾인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謀變者에 대한 推覈과정에서 大靜·旌義民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읍 募軍者로 지목된 高德好·梁仁福·白仁好·姜成三 등이 그러한 역할 자체를 적극 부정하고 있고 또 양읍에 왕래한 일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의 활동은 濟州牧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고 그것도 州城 攻取와 관련해서 나타나기 때문에⁵²⁾ 梁濟海가 말한 兩邑 同時舉兵은 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양읍 募軍이나 양읍 同時舉兵說은 梁濟海의 단순한 구상이나 계획일 뿐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었다.⁵³⁾

이렇게 볼 때 거사에 필요한 인원확보는 주로 濟州牧을 대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11月 4日에 일단락된 募軍額은 어느 정도가 될까 이는 9백명이라는 당초 목표가 중간에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적게는 1백명, 많게는 3백명으로 추측된다. 전자 경우는

- 49)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白仁好·姜必方·梁日新·金益剛問目, 梁濟海問目·更問目. 11月(甲子朔)을 거사 달로 정한 이유는 “甲者天千之首 子者地支之首 似利於發兵”에 근거하고 있다.
- 50)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尹光宗進告, 高德好·姜先貴·姜成圭·金益剛問目, 梁濟海問目·更問目. 이 때 梁濟海는 11月的 거사가 不發로 끝날 시 익년 1月 거사를 꿈꾸고 있었다.
- 51)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尹光宗進告
濟海曰(中略)十六日夜伏兵於加嶺生求藪 待城門開凌晨突入州城攻取 旌·大兩邑亦於伊日同時舉兵云云
- 52)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尹光宗進告, 高德好·梁仁福·白仁好·姜成三問目
- 53) 이러한 움직임은 梁濟海의 사적 관계를 통해서 은밀히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드러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패로 돌아간 것 같다.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白仁好問目 참조.

渠供中以爲 高德好傳以濟海募得百名 擇日入城 仍勸隨後 故警怖隱避⁵⁴⁾

에서와 같이 1백명으로 州城을 공취하겠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9月 초에 이미 70명을 확보하고 그 후 謀變 主導勢力에 의한 20명, 50명 석의 모군활동이 진행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 숫자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한다. 후자는 10月 중순 경 梁濟海의 언사에 기반한 것으로서 이 때 梁濟海는 9백명의 모군이 이루어지면 3읍에 3백명씩 分遣하겠다는 의사를 피력⁵⁵⁾한 바 있었는데 이는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양읍 募軍과 양읍 同時舉兵이 실현되지 못하고 모변 주도세력의 활동이 주로 州城攻略과 관련되었음을 고려한다면 11月 초 募軍額은 3백명으로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10月 중순 경의 未充者 4·50명 云云은 3백명에 대한 말이 될 것이다.

이처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완료된 모군활동은 이제 최종적인 거사를 앞두고 그에 관여한 同謀者 간의 마지막 회합을 위해 11月 8日 白仁好 家에서 聚會키로⁵⁶⁾ 하였다. 그러나

渠(尹光宗)仍與之唯唯而歸 百爾思量 知情不告 終未免同參之律 故事未舉之前 急急赴訴⁵⁷⁾

에서 처럼 聚會 前日 거사에 따른 심적 불안을 이기지 못한 尹光宗이가 이러한 모변 사실을 관아에 進告함으로써 이제까지 추진된 모변은 모두 허사로 돌아가

54) 《日省錄》純祖 甲戌年 閏2月 14日 丙子, 白光賢 내용.

55)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尹光宗進告.

即今如果募得壯丁九百餘名 三百名則分遣州城三百名則分遣大靜 而未充其數者爲四五十名

56)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尹光宗進告. 동 文彰年問目에는 聚會場所가 威恒太家로 나온다. 그러나 이는 전혀 다른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동일 장소를 의미한다. 그 까닭은 白仁好家 挾房에서 威恒太가 기거했기 때문이다. 《日省錄》純祖 甲戌年 閏2月 14日 丙子, 威恒太 내용 참조.

57)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尹光宗進告.

고 모변 관련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⁵⁸⁾가 잇따르게 되었다.

당시 濟州牧使인 金守基는 이들 모변자에 대한 推覈을 判官 張持大, 大靜縣監 白師健, 旌義縣監 權就一과 더불어 진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⁵⁹⁾하였다. 또한 모군활동 상황을 기재한 高德好의 募軍都目(募軍錄)이 중간에 불태워졌다는 洪宗樺의 추후 進告에 따라 이의 연루자 10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연이어 보고⁶⁰⁾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朝廷은 모변이 갖는 중대성에 주목하여 應教 李在秀를 특별 加資하고 濟州按覈(察理)兼慰諭使로 임명하여 모변자에 대한 更覈과 민심수습의 책무를 부여⁶¹⁾하기에 이르렀다.

4. 謀變의 主體와 歷史的 性格

梁濟海 謀變에 대한 찰리사 李在秀의 盤覈 결과는 그의 分等啓本⁶²⁾에 나타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구금자 7명 중 一律論斷은 2명, 絶島勿限年定配는 4명, 島配는 6명, 保放 10명, 全釋 25명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일률논단은 首唱元犯者인 梁濟海와 더불어 殺吏攻城의 모변을 적극 주도했을 경우에 그리고 절도물한년 정배와 도배는 同黨으로 지목되어 知情律 또는 連坐律에 저촉되었을 때, 보방과 전석은 모변에 관계했어도 죄상이 가볍거나 혐의가 별로 없는 경우에 내려진 조치였다.

58) 이 시기 모변 관련자에 대한 수색은 全羅地域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全羅監司朴崙壽以濟州牧出陸島人譏調馳啓 참조.

59)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濟州牧使金守基馳啓. 推覈過程에서 梁濟海는 감시의 소홀을 틈 타 11月 9日 州城 50里 밖의 山藪로 탈출했다가 동 12日 奉蓋里 夫昌蕃家 竹林에서 다시 체포되었다. 탈출과 관계된 기사는 《日省錄》純祖 癸酉年 閏2月 14日 丙子, 夫昌蕃·梁廷樺 내용 참조.

60) 《備邊司牒錄》204, 純祖14年 甲戌 2月 30日, 20册, p. 770. 《日省錄》純祖 甲戌年 閏2月 14日 丙子, 濟州察理使李在秀馳啓. 연루자 10명은 평소 高德好와 상견했다 해도 募軍과는 관계가 없었고 進告 사항인 募軍錄 燒火事 문제도 일체 모르는 상태였다. 그 결과 進告人 洪宗樺은 무고죄에 저촉되어 처리되게 되었다.

61)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4日 丁酉, 12月 5日 戊戌條 참조.

62) 《日省錄》純祖 甲戌年 閏2月 14日 丙子, 閏2月 19日 辛巳條 참조.

이 중에서 島配 이상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그 대부분이 尹光宗이가 언급한 首唱謀事者⁶³⁾로서 모변을 적극적으로 이끈 세력으로 이해된다. 이들 주도세력은 서로가 밀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몇 가지 점에서 갖고 있었는데 이를 개괄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謀變 主導勢力的 刑量과 身元

	姓名	刑量	居住地	身分	人的關係	備考
1	高德好	一律	上無里	千 摠		혹 吏校
2	梁日會	"			梁濟海 子	
3	梁仁福	絶島·定配	下無里	書 房		
4	姜必方	"	別羅里		姜先達 庶子	
5	金益剛	"	城 外		梁濟海 查頓	
6	金昌瑞	"			梁濟海 親友	
7	姜成三	島 配	別羅里		梁濟海 妾甥	
8	姜成圭	"	"		姜必方 子	
9	梁日新	"			梁濟海 子	連坐律
10	梁日彬	"				"
11	高元昌	"	臥山里			혹 邑內
12	李愛昌	"	邑 內			

(資料：《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條, 동 甲戌年 閏2月 14日 丙子條)

이들의 연결 가능성으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모변 주도세력의 거주지가 濟州牧 中面⁶⁴⁾에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高元昌 경우는 濟州牧 左面 臥

63) 尹光宗進告의 首唱謀事者는 모두 15명으로 島配 이상자 12명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推覈過程에서 발생한 杖斃者(7명)에 말미암은 것으로서 察理使의 更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梁日新·梁日彬 경우는 連坐律 적용으로 島配되었기 때문에 모변 주도세력으로 보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64) <표2>의 上無里, 下無里, 別羅里는 제주목 중면에 속한다. 上無里(上無等川里)는 州城 東南距 13里, 下無里(下無等川里)는 東南距10里, 別羅里(別羅花里)는 東南距 11里, 左面의 臥山里(臥乎山里)는 東南距 22리에 위치했다. 《邑誌》 6, 《濟州邑誌》 濟州牧 坊里條, 亞細亞文化社, 1983, pp.172~173 참조.

山里로 나오지만 그의 신분이 吏校이고 그 거주지가 邑內로도 운위⁶⁵⁾되고 있음을 보면 그 역시 中面 거주자로 추정된다. 한편 거주지가 불확실한 梁日會 등 4명은 梁濟海와의 관계가 父子 또는 親友관계⁶⁶⁾임으로 이들 역시 中面 거주자로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 모변의 주도세력은 거개가 제주목 중면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이들의 지위가 鄉村社會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계층이라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千掾·書房·吏校로서 그 분포로만 볼 적에는 약간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이 뚜렷치 못한 인물 중 梁日新·梁日彬은 단순한 連坐律로 연루되었기 때문에 모변 주도세력으로 보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뒤따르고 그 결과 그 분포율도 달리 변동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표2>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牧使 金守基의 추책과정에서 杖斃된 인물 중 모변 주도세력으로 볼 수 있는 梁濟海·高成太가 각기 風憲, 軍器書員이라는 점과 그리고 거사일 擇定에 관여한 梁時彦 신분이 吏校라는 점을 감안⁶⁷⁾한다면 모변 주도세력의 상당수는 有力階層이었음이 확실해진다. 더우기 여러 供招에 나오는 정체 불명의 金旗牌·金哨官·金別監·田生員·金座首 子 가 모변 관련자로 등장⁶⁸⁾됨을 볼 때 이러한 생각은 더욱 분명해진다.

세째는 모변 주도세력의 대부분이 서로 친척·인척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신분이 뚜렷치 못한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데 특히 梁濟海·姜必方을 중심으로 하여 父子·查頓·妾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梁濟海와 姜必方 사이는 姜成三을 매개로 하여 梁濟海가 姜成三의 매부가 되고 姜必方은

65)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姜必方·姜成圭問目.

66) 《日省錄》純祖 甲戌年 閏2月 14日 丙子, 金昌瑞 내용.

67)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高德好·姜必方·梁日新問目; 동 甲戌年 閏2月14日 丙子, 濟州察理使李在秀馳啓(分等啓本). 杖斃者 중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梁濟海와 高成太뿐이다. 梁時彦 경우는 거사일 擇定에 관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供招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중간에 杖斃된 것으로 여겨진다.

68)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尹光宗進告, 高德好·白仁好·文彭年·姜成圭·梁日新問目. 당시 제주의 유력계층은 鄕任·吏任·軍任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지위는 전반적으로 볼 때 朝鮮後期에 이르면 이들 수록 약화 추세에 있었고 地方官과 밀착된 일부 소수인만이 權力中心部에 위치한 것 같다.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實狀과 그 性格

姜成三의 堂叔이 되기 때문에 상호 인척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표2>에 나오는 인물 중 신분이 뚜렷치 못한 자는 金昌瑞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梁濟海와 친척·인척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謀變과 관련하여 保放·全釋된 인물 중 이미 모변계획을 알았거나 또는 여타 供招에 나오는 12명⁶⁹⁾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신원을 알아 본다면 우선 외형적으로 볼 때 이들은 모변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치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告官치 않았다는 점에서 방관세력 내지 거사시 호응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분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들이 모변 주도세력의 포섭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당시 모변세력의 모군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 <표3>에서와 같이 거주지·신분 그리고 상호 간의 인척관계가 될 것이다.

<표3> 保放·全釋者(일부)의 刑量과 身元

	姓名	刑量	居住地	身分	人的關係	備考
1	姜先貴	保放	別刀里	冶匠	姜成三父	干連情
2	文彭年	"	道頭里			"
3	金股寶	"				"
4	金順瑞	"				"
5	白光賢	"				
6	白仁好	全釋	邑內	把摠	梁濟海妾媵	年淺愚迷
7	姜成五	"	別羅里		姜成三弟	
8	高尚得	"	下無里	家貧人賤		
9	梁廷燁	"			梁濟海親叔	
10	金光鼎	"	邑內	商人		
11	宋益大	"				
12	田京祿	"			梁濟海媵妹間	

(資料：《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丙申條，肅 甲戌年 閏2月 14日 丙子條)

69) 保放·全釋者는 모두 35명으로서 이 중에는 모변과 상관없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예컨대 梁濟海의 친척, 梁濟海 탈출에 연루된 피의자, 誣告로 야기된 募軍錄 燒火事에 관련된 23명이다. 이 외 나머지 12명은 모변 주도세력과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또는 여타 공초에 나오는 인물들이다.

우선 포섭 대상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거주지가 분명한 인물들은 모두 濟州·牧 中面⁷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거주지가 분명치 않은 6명 중 4명은 梁濟海의 等訴·設楔 그리고 擇日入城과 관련된⁷¹⁾ 것으로 보아 이들 역시 상기의 거주자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표3>에 나오는 保放·全釋者 중 거거는 濟州牧 中面人임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서 모변자의 모군 활동지역은 濟州牧 中面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의 신분은 대개의 경우 不明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신분이 드러난 3명 경우는 治匠·把摠·商人으로 확인되는데 이 중 治匠·商人은 근거확보와 관련한 인물이고 把摠은 梁濟海 첩남으로서 모변장소를 제공한⁷²⁾ 인물이다. 이 외 신분이 모호한 인물들은 高尚得 스스로가 표현한 家貧人賤의 예와 같이 가난한 農民들로 추정되고 그 결과 포섭 대상자는 農民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 외에 거사에 필요한 무기확보와 관련해서 治匠·商人 등이 더불어 주목되었다고 사료된다.

포섭 대상자와 모변 주도세력 간의 인적관계는 梁濟海를 중심으로 한 친척 인척관계가 특히 주목된다. <표3>에서 드러난 白仁好·梁廷燁·田京祿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姜先貴·姜成五 경우도 梁濟海와 일정한 인척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 사실은 <표2>에서 제시한 姜成三을 매개로 하여 서로가 연결되는데 이 때 姜成三이가 梁濟海의 첩남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인척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섭 대상자 중에는 梁濟海와 친척·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純祖13년에 발생된 梁濟海 謀變은 濟州牧 中面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모변의 주도세력은 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

70) <표3>의 別刀里, 道頭里는 제주목 중면에 속한다. 別刀里는 州城 東距 10里, 道頭里는 西距 15里 지역에 위치했다. 《邑誌》6, <濟州邑誌> 濟州牧 坊里條, 亞細亞文化社, pp.171~172 참조.

71) 위의 4명은 金殷實·金順瑞·白光賢·宋益大이다. 그러나 梁濟海의 募軍地域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의 신분이 제주목 중면 풍현이고 東村 3·4里 지역에 대한 모군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주목 중면이 그의 주요 활동무대로 여겨진다.

72) 《日省錄》 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白仁好問曰.

供招以爲 渠雖是濟海之妾媵年幼無識 故果無相識之事 而濟海來渠家之時許多出入之人不能盡記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實狀과 그 性格

들이 대부분으로서 鄉村社會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風憲·吏校·千總과 같은 유력계층과 梁濟海와 친척·인척관계에있는 인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포섭 대상자는 모변 주도세력의 구성 성격상 같은 지역의 거주자로 한정되었고 그 중에서도 농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거사에 필요한 무기확보와 謀變장소와 관련해서 治匠·商人·把總⁷³⁾이 주목되기도 하고 梁濟海와 친척·인척관계에 놓인 인물들이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梁濟海 謀變이 갖는 역사적 성격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梁濟海가 기도한 모변의 궁극적 목표는 別國 건설이었다. 이 때 別國의 모습은 그 어휘에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중앙 정부로부터 이탈된 별개의 국가로서 梁濟海가 島主가 되고 그 외 인물들이 여타 권력을 장악하는 그러한 국가였다. 그러나 후자의 권력 분포를 살펴 보면 <표4>에서와 같이

<표4> 成事後 權力改編計劃⁷⁴⁾

地位 供述者	大靜 縣監	旌義 縣監	萬戶	兵牌	禮牌	座首	鎮將	
							朝天	禾北
姜必方	梁仁福	金益剛						
文彭年	金益剛	梁廷摩						
姜成圭	梁濟海	查頓兄弟						
梁日新	金益剛	高德宗	金信剛	姜必方子	高德好子	金益剛子	梁日會	姜成三

(資料：〈日省錄〉純祖 癸酉年 2月 3日 丙申條)

73)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는 제주사회에서도 전개되고 있었다. 이는 白仁好 경우, 그가 나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把總 지위를 누린다든가 또는 官人輩들의 作契 구성원이 아니면 座首·千總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4) <표4>의 권력개편 계획은 그 자료에서도 규지할 수 있듯이 모변 주도세력 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모의 중간과정에서 드러난 未完의 내용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成事 후 권력개편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도내 주요권력이 모변 주도세력과 그 자손에게만 집중되어 논공행상의 성격을 짙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상을 전제로 한 모군활동에서 필히 대두될 수 있는 한 현상으로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人事行政의 부조리를 지적한 梁濟海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미 동일한 모순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島主⁷⁵⁾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乙那後孫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이 역시 앞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지향하고자 한 別國은 기존의 모순을 완전히 제거한 새로운 사회의 창출이 아니라 권력층만이 교체된 단순한 권력구조의 재편성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梁濟海 謀變은 도내 권력장악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復古的이고 도 分離主義的인 성향⁷⁶⁾이 그 이면에 짙게 깔려있다 하겠다.

한편 이러한 성향이 결과할 지도 모르는 중앙으로부터의 군사적 제재에 대비키 위해서 제주와 내륙 간의 船路를 일체 단절시키려 했던 구상은

姜必方則初次納招以爲 聞濟海之許多說話而責以狂妄 濟海之約日聚會排定舉事乃
是凶至悖之說 而答以島民衣食皆藉陸地 作此妄舉反致盡劉⁷⁷⁾

에서와 같이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도민의 현실적 상황⁷⁸⁾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처사로서 그들의 모변 기도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 지를 알려주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모변 주도세력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구성 성격에서 연유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그들의 이해가 바로 도민들의 이해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해 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다. 실제 모군과정에서 나타난 모변세력의 움직임은 도민부담을 경감시키는 구체적인 개혁안의 제시보다는 인사 부조리와 결부된 相贊揆의 타파에 급급하고 있어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에

75) 島主는 牧使 또는 判官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日省錄》純祖 癸酉年 12月 3日 丙申, 姜成圭·梁日新聞目 참조.

76) 이러한 분리주의적 성향은 高宗 때의 房星七亂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房星七亂은 내륙에서 들어 온 南學黨 지도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차이가 있다. 조성윤,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구조와 성격 : 남학당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4, 1987, p. 233 참조.

77) 《日省錄》純祖 甲戌年 閏2月 14日 丙子, 濟州察理使李在秀馳啓, 姜必方 來 用. 이와 유사한 내용이 동 金益剛 기사에도 나온다.

78) 拙稿,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pp. 300~304.

는 미흡한 감을 던져 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梁濟海 謀變은 현실 모순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의지를 구체적으로 집약하지 못하고 일부 소수인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사건⁷⁹⁾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5. 맺 음 말

지금까지 19세기 초에 발생된 梁濟海 謀變을 해명키 위하여 그 가능성을 배태했던 사회경제적 조건과 모변의 구체적 동기 및 전개양상 그리고 모변의 주체와 역사적 성격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제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謀變이 발생되기 전 제주사회는 察理使 李在秀의 지적처럼 이미 그 내부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중 差任을 둘러싼 인사문제는 人多稟小라는 상황을 밑바탕에 깔면서 守令과 吏校輩에 의한 부정이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었고 雜稅·雜役을 중심으로 한 收取體制의 문란은 도민의 생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조건 하에서 濟州牧 中面 風憲 梁濟海는 洪景來亂의 일정한 영향⁸⁰⁾ 하에 도내 제반 모순의 타파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양차에 걸쳐 謀變을 시도하였다. 이 중 純祖12년에 기도한 모변은 이듬해 모변의 모체가 되는 것으로서 도내 4官(牧使·判官·兩邑縣監)을 제거하고 地土船의 출륙금지와 來島陸船의 覆沒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모변은 거사에 필요한 募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79) 金泰能씨는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제주민의 자주기도라는 측면에서 이해한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유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제시가 필요했으며 氏의 논거로 내세운 사료상의 自治·自主는 도민 전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梁濟海에 국한된, 범위를 확대하자면 그를 비롯한 일부 소수인에 한정된 自治·自主로 보아야 할 것이다.

80) 흥경래난 발생시 도내에는 大靜縣 儒生 梁濟慶 등을 중심으로 反民亂의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년 후의 梁濟海 謀變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도내 유력계층의 이해가 서로 같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金錫翼, 《耽羅紀年》, 瀛洲書館, 1918, p.196. 高炳五, 《元大靜郡誌草稿本》, 1966, pp.187~189 참조.

한편 純祖13年の 모변은 軍器確保·募軍活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 군기확보는 군기조달을 담당한 자와 모변 주도세력과의 관계가 지극히 영성한 데에서 커다란 차질을 빚었고 그 결과 약간의 鳥銃·環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몽둥이와 같은 단순 무장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리고 모군활동은 成事に 필요한 知覺, 勇力者에 일차적 관심을 두면서 等訴·懷柔·威脅의 방법을 통하여 9백명의 인원을 확보코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모군인원은 3백명 정도에 불과해 당초 기도한 3읍 同時 舉兵計劃은 州城 만을 대상으로 변경치 않으면 안 되었다. 舉事日도 처음 예정한 11月 21日이 營門 新·舊番과 上下各班의 會點日이었기 때문에 동 17日로 변경하고 거사에 따른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11月 8日 최종 회합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同謀者 尹光宗이 거사에 따른 심적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회합 前日에 官衙에 告變⁸¹⁾함으로써 前年부터 계획한 謀變은 일시에 좌절되게 되었다.

모변 관련자에 대한 심문은 牧使 金守基에 의해 일차 행해지게 되었는데 이때 梁濟海를 비롯한 7명이 杖斃되고 47명의 피구금자가 발생되었다. 이들 피구금자들은 察理使 李在秀에 의해 다시 盤覈되었는데 그 중 同黨으로 지목되어 島配 이상의 刑量을 받은 12명은 모변의 主導勢力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濟州牧 中面에 거주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으로 風憲 梁濟海와 함께 鄉村社會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千總·吏校·書房의 신분계층과 梁濟海와 친척·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골간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保放, 全釋으로 풀려 난 인물 중 모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또는 다른 供招에 나오는 12명은 포섭 대상자로서 앞서의 경우와 같이 濟州牧 中面에 거주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으로 農民·冶匠·商人의 신분계층과 梁濟海와 친척·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梁濟海 謀變은 당시 제기되고 있었던 지방 인사의 부조리와 수취체제의 문란을 배경으로 하면서 중앙에서 과견된 4관과 奸惡 吏

81) 모변 進告者에 대해 金錫翼은 '史氏曰'이라는 표현을 빌어 尹光宗 외 金之儉이 더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료에 나오지 않고 그 이상의 언급도 없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추리로 그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제주사를 다룬 개설류 중에는 혹 金載儉이라고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金之儉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金錫翼, 《耽羅紀年》, p.97, 金宗業, 《耽羅文化史》, 조약돌, 1986, p.147. 김봉욱,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p.177.

校들의 제거를 통하여 독립적 성격의 別國을 건설코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주체는 제주사회의 유력계층과 梁濟海와 친척·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중심을 이루었고 일반 농민층이 포섭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모변에 대한 농민층의 소극적 반응과 동모자 중 進告者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까지 추진된 모의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관련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告變者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농민층의 태도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모변 자체에 내재해 있는 한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변 주도세력과 농민층의 이해가 서로 같지 않은 데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실제 모변 주도세력이 구상한 別國 건설은 현 모순을 타파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 아니라 단순한 권력구조의 개편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도민의 현실 모순에 대한 반대의지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모변 주도세력이 갖는 한계성으로 그들의 구성 성격에서 유래된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조선 봉건사회의 해체과정에서 생성된 산물로서 장차의 壬戌 濟州民亂을 예비⁸²⁾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큰 것이었다.

82) 이 양자 간의 관계는 아직 해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임술 제주민란시 도민의 반응이 矯救民瘼이라는 명분하에 牧使逐出과 奸吏打殺을 추진한 것을 보면 앞서의 양제해 모변과 거의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전적인 것이 아닐 지라도 어느 면에 있어서는 서로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